

행정안전부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월 일	2021. 8 . .

법 제 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법률 인용 조항 정비 및 공중화장실등 내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이 개정(2020.12.22.)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안 제4조의2)

다. 규제의 재검토(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라 함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중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제1호는”으로, “되는”을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2호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 : 2015년 1월 1일
 2.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 2022년 1월 1일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제4의2 관련)

1. 기저귀교환대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말한다.
비치형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가구 또는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이 있다.

2.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는 낙상 방지를 위하여 안전 벨트 또는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 벨트의 경우 폭은 최소 20밀리미터 이상으로 벨트 체결 시 영유아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여야하며, 벨트 체결 후 294뉴턴의 힘을 가하였을 때 조임구의 파손, 느슨함, 벨트의 절단, 봉사의 절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보호 울타리의 경우 보호자가 앉거나 서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3 방향은 최소 160밀리미터 이상의 내부 높이를 해야 한다.

3. 기저귀교환대의 설치 높이는 이용자 및 제작 의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가 서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650밀리미터 이상 85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단, 세면대 등의 주변 상단면에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를 부착 또는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95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보호자가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5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0밀리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4. 설치형 기저귀교환대는 나사, 리벳 등을 이용하여 벽이나 구조물 등에 견고 하게 부착하고,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는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부착 또는 고정하 여야 하며, 부착 또는 고정 부위는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2방향 이상 에 설치형은 294뉴턴, 비치형은 147뉴턴의 힘을 가하였을 때, 떨어짐, 갈라짐, 밀림 이 없어야 한다.
5.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는 길이 방향 650밀리미터 이상, 너비 방향 380밀리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영유아의 이동 간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 된 내부형상이 땅콩 또는 인체 모형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는 길이 방향만 적용한다.
6.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벽 등에는 표1과 같이 안내 표시를 부착 또는 게시하 여야 한다.
7.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표2의 해당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기저귀교환대 본체에는 다음 표에 제시된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조년월 : 제조년월은 “○○○○년 ○○월”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조국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5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6 크기·체중의 한계 :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 는 어린이제품은 제품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7 필요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8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라는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구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9.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품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비치형은 50킬로그램의 하중, 설치형은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곱하기 2의 하중을 1분 동안 균등하게 가하였을 때, 파손, 이탈 또는 갈라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사용 안전성은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와 동등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였을 때 하중으로 인한 기울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5도 이내여야 하고, 하중을 가하는 동안 기저귀교환대가 접히지 않아야 한다.

10. 법 제12조(시설 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유지·관리 조건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제13호.(단, 제3호, 제5호, 제7호는 동일 제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격의 시험·검사 방법은 육안 및 표3에 따른다.

12.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장소에는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휴지통, 위생시트 등을 비치할 수 있다.

13.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기저귀교환대의 사용상 이상 유무, 청결 및 위생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비고

1. 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설치 규격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2 등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표1]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1. 안내 표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보호자 행동 수칙 및 안전 벨트 착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나. 화장실 관리인 전화 번호 또는 비상 연락처

2. 안내 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벽면 또는 그 주변에 부착 또는 게시한다

3. 안내 표시의 크기는 최소 100밀리미터 × 20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내 표시 예시)

〈경고〉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를 “꼭” 맵시다 !		
	■ 청결 사용 ■ 교환대 접기	관리인 전화번호
안전 벨트 착용	타인 배려	비상 연락처
기저귀교환대에 개인물품을 얹거나 걸지 마세요		

[표2]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의 적용 항목 및 허용치

항목		허용치
작은 부품		작은 부품 실린더에 잠기지 않을 것
날카로운 끝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날카로운 가장자리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을 것
유해원소 용출 ¹⁾	안티모니(Sb)	60 mg/kg 이하
	비소(As)	25 mg/kg 이하
	바륨(Ba)	1 000 mg/kg 이하
	카드뮴(Cd)	75 mg/kg 이하
	크로뮴(Cr)	60 mg/kg 이하
	납(Pb)	90 mg/kg 이하
	수은(Hg)	60 mg/kg 이하
	셀레늄(Se)	500 mg/kg 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 ^{2), 3)}	1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³⁾	75 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⁴⁾	DEHP (Di-(2-ethylhexyl) phthalate)	총 합 0.1 % 이하
	DBP (Dibutyl phthalate)	
	BBP (Benzyl butyl phthalate)	
	DINP	

	(Diisononyl phthalate)	
	DIDP (Diisodecyl phthalate)	
	DnOP (Di-n-octyl phthalate)	
	폼알데하이드 ⁵⁾	75 mg/kg 이하
아릴아민 ⁶⁾	4-aminobiphenyl [92-67-1]	각각 30 mg/kg 이하
	benzidine [92-87-5]	
	4-chloro-o-toluidine [95-69-2]	
	2-naphtylamine [91-59-8]	
	o-aminoazotoluene [97-56-3]	
	2-amino-4-nitrotoluene [99-55-8]	
	4-chloroaniline [106-47-8]	
	2,4-diaminoanisole [615-05-4]	
	4,4'-diamino-diphenylmethane [101-77-9]	
	3,3'-dichlorobenzidine [91-94-1]	
	3,3'-dimethoxybenzidine [119-90-4]	
	3,3'-dimethylbenzidine [119-93-7]	
	4,4'-methylenedi-o-toluidine [838-88-0]	
	p-cresidine [120-71-8]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4,4'-oxydianiline [101-80-4]	
	4,4'-thiodianiline [139-65-1]	
	o-toluidine [95-53-4]	
	2,4-toluylenediamine [95-80-7]	
	2,4,5-trimethylaniline [137-17-7]	
	2-methoxyaniline [90-04-0]	
	4-aminoazobenzene [60-09-3]	
	2,4-xylydine [95-68-1]	
	2,6-xylydine	

	[87-62-7]	
	pH ⁵⁾	4.0 ~ 7.5
니트로사민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N-니트로소모폴린 (N-nitrosomorpholine)	총 합 0.05 ⁷⁾ mg/kg 이하
니트로사민 류 생성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nitrosodiethylamine)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nitrosodi-n-propylamine)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nitrosodi-n-buthylamine) N-니트로소피페리딘 (N-nitrosopiperidine) N-니트로소피롤리딘 (N-nitrosopyrrolidine) N-니트로소모폴린 (N-nitrosomorpholine)	총 합 1.0 ⁷⁾ mg/kg 이하
1. 36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한다. 2.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한다. 5.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6.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염색한 섬유 부분에만 적용한다.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 []안은 CAS번호 7.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 중합체(elastomer)에 한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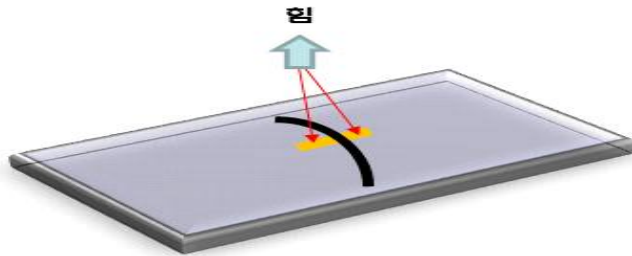
[표3] 시험 · 검사 방법

1.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적어도 시험·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측정 기구는 질량 50g, 힘 1 N, 각도 0.5°, 치수 1 mm, 시간 1 s의 최소 읽음값을 가져야한다.

2. 안전 벨트의 강도

조임구가 중앙에 오지 않게 적절히 벨트의 길이를 조절하여 안전 벨트를 체결한 후 중앙부에 지름 약 25 mm의 금속봉을 넣고 금속봉에 수직방향으로 $294 \text{ N} \pm 5 \text{ N}$ 의 힘을 가하였을 때 조임구의 파손, 느슨함, 벨트의 절단, 봉사의 절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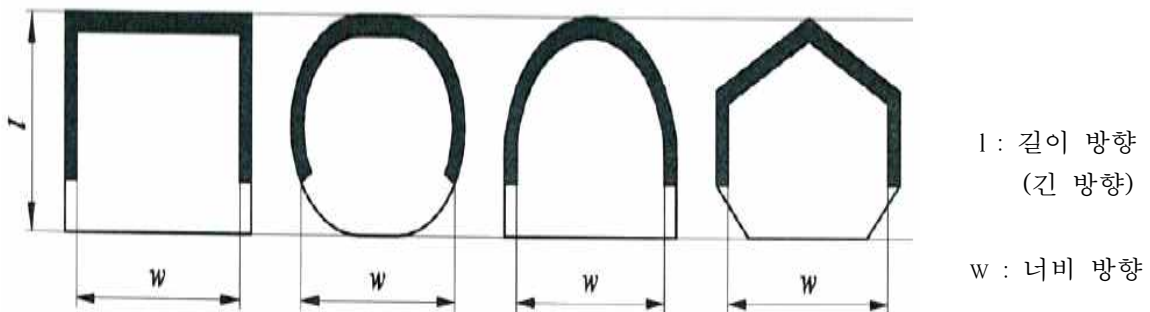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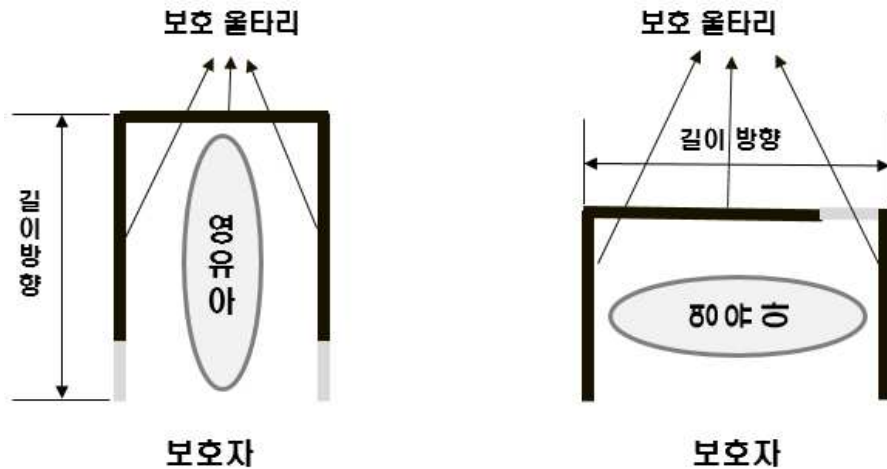


3. 보호 울타리

안전 벨트가 없는 기저귀교환대의 3면은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길이 방향의 보호 울타리 높이는 최소한 길이 방향의 75%까지 160 mm 이상이어야 하고,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는 길이 방향의 최소 650 mm 까지 보호 울타리의 높이가 160 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 벽면 등이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보호 울타리의 한 면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직물류로 구성된 그물망 형태의 울타리는 보호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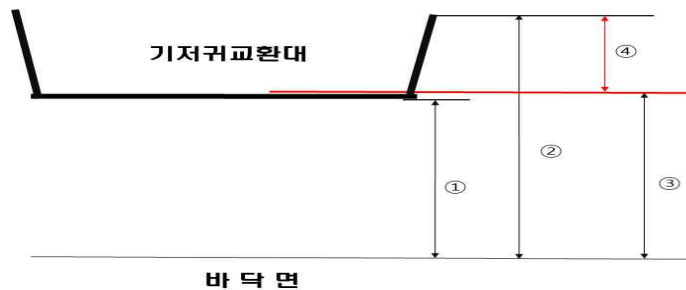




4. 기저귀교환대 높이

기저귀교환대의 하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기저귀교환대의 하부면까지의 높이로 하고,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에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면까지의 높이에서 상단 내부 깊이를 뺀 높이로 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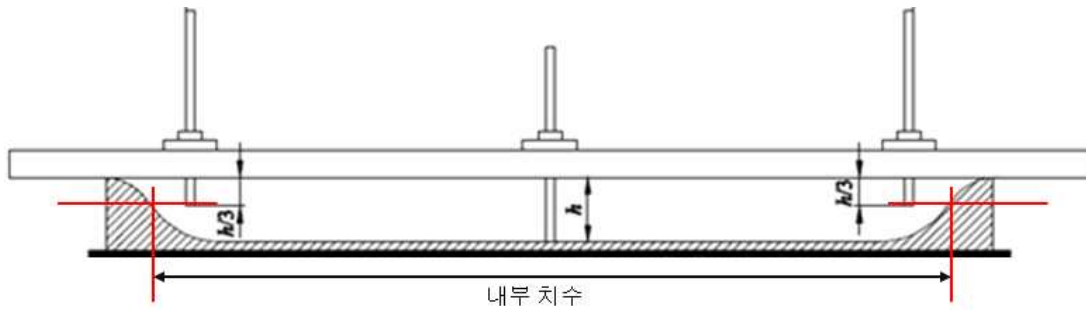
① 하단 높이, ② 상단 높이, ③ 상단 내부 높이, ④ 상단 내부 깊이

5. 기저귀 교환대 내부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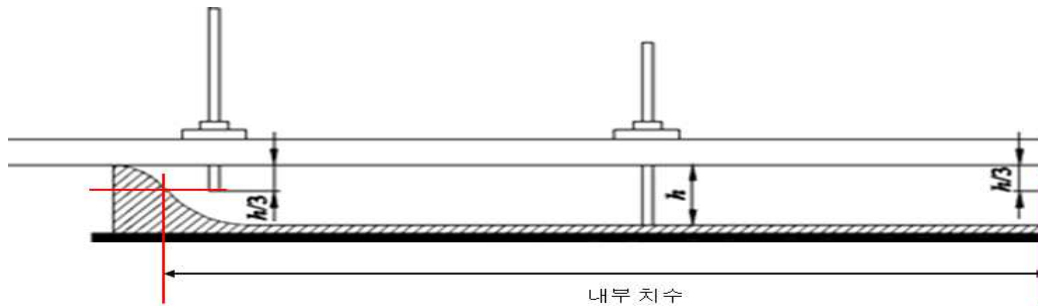
가. 영유아를 눕히는 내부면의 길이 및 너비 방향의 치수를 측정한다.

나. 보호 울타리 등이 영유아를 눕히는 면과 완만한 반경을 가지는 형태의 제품은 다음 예시1, 예시2와 같이 굽거나 휘어지지 않는 표면이 평탄하고 단단한 막대를 기저귀교환대의 너비 방향 상단면에 놓고 영유아를 눕히는 면의 중앙부 상단 내부 깊이(h)를 측정한 후에 상단면에서 내부 깊이의 1/3 지점과 만나는 양쪽 측면까지의 거리를 너비 방향의 내부 치수로 하며, 길이 방향의 내부 치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단, 서로 마주 보는 상단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는 높은 면을 기준으로 낮은 면의 높이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상단 내부 깊이를 정한 후에 내부 치수를 측정한다.

(예시1) 마주보는 상단면 높이가 동일한 경우



(예시2) 마주보는 상단면 높이가 다른 경우



6. 제품 안정성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가.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가벼운 비닐시트를 깔고 모래 또는 작은 쇠구슬 등으로 균등하게 분포시킨 후 모래 또는 쇠구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꺾이거나 끊어지지 않는 소재로 둘러싼다.

나. 가목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동일한 크기와 질량을 갖는 하중 추를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곡물 포대 등을 균등하게 엮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시)

종 류	하 중
비치형	50 kg $\pm$ 1 kg
설치형	(별표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times$ 2) kg $\pm$ 1 kg

7. 사용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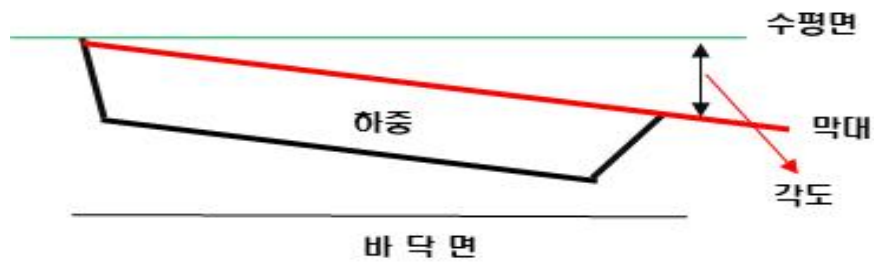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별표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와 동등한 하중을 가하였을 때 기울기는 다음 예시와 같이 길이 및 너비 방향으로 측정 시 아래로 기울어진 각도는 모두 5도 이내여야 하고 하중을 가하는 동안 기저귀교환대가 접하지 않아야 한다.

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 따른 유모차 안전기준의 유아 치수 모형(약 9.5 kg)을 기저

귀교환대에 눕히고 치수 모형 위에 나머지 하중을 균등하게 가한다.

- 나. 가목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표3 제6호(제품 안정성) 가목 또는 나목 방법으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한다.

(예시1)



(예시2)

종류	하 중
설치형, 비치형	(별표 제8호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text{kg} \pm 0.5 \text{ kg}$

8. [표2] 설치 전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의 적용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	-----			
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	-----			
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	-----			
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	제2조제4호-----			
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	-----			
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행 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규			
	격의 영 유아용기저귀교환대”			
	라 함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	-----			
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하	-----			
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기준으로 제1호는 -----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2호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			

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 <u>1.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 : 2015년 1월 1일</u> <u>2.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 2022년 1월 1일</u>
--	--